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639호 2010. 6. 7. (월)

훈 령	
-----	--

○ 훈령 제159호 [울산광역시북구청 사격 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2

공 고	
-----	--

○ 공고 제2010-403호 [2010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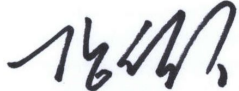
【 안 내 문 】

-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매주 금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 방법
⇒ 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 행정정보 → 입립마당 → 북구공보에서 열람

회 람									
--------	--	--	--	--	--	--	--	--	--

발행:울산광역시북구 편집:문화홍보과(☎ 219-7207 행정 7207)

**울산광역시북구청 사격 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2010년 6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159호

울산광역시북구청 사격 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울산광역시북구청 사격 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청 사격 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을 “울산광역시 북구청 사격 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북구청사격운동경기부(이하 “사격부”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청 사격 운동경기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격부”를 “울산광역시 북구청 사격 운동경기부(이하 “사격부”라 한다)”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명”을 “2명 이내”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10명이내”를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코치는 선수 중 1명이 겸직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급이상”을 “2급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있는자”를 “있는 자”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거”를 “따라”로, “1년단위로”를 “1년 단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3×4)”를 “(3cm×4cm)”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원칙으로한다”를 “원칙으로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는”을 “또는”으로 한다.

제8조 중 “승인없이”를 “승인 없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보수지급시”를 “보수 지급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일이후”를 “1일 이후”로 한다.

이 경우 코치를 겸직하는 선수의 기술수당은 지도자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9조의2 중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별표2”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경기중에서”를 “경기 중에서도”, “2개분야”를 “2개 분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이상”을 “1년 이상”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1년미만일”을 “1년 미만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총근무일수”를 “총 근무일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퇴직전”을 각각 “퇴직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개월이내”를 “1개월 이내”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록후”를 “기록 후”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으로 한다.

제13조 중 “「울산광역시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개시후 1개월이내”를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8월중”을 “8월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10일전까지”를 “10일 전까지”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급이하”를 “6급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원활한”을 “원활한”으로 한다.

제17조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별표3”을 “별표 3”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9조 중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울산광역시북구 재무회계 규칙」,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사무처리규정」”을 「사무관리규정」”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수지급기준표 (제9조제1항 관련)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기 본 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적용	
상 여 금	정근수당	월 봉급액의 100%	
수 당	가족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적용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적용	
	기술수당	200,000원 (지도자 : 350,000원)	
복 리 후 생 비	명절휴가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적용	
	가계지원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적용	
	정액급식비	월 300,000원	
	교통보조비	월 100,000원	
	목 육 비	월 50,000원	
	간 식 비	월 45,000원	

2010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7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인

1. 계획인원 : 0명 정도

2. 명예퇴직 신청

가. 신청기간 : 홀수달 1일 ~ 15일(명예퇴직예정일 : 짝수달 마지막날)

·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 위 신청기간 외에 조직의 개폐 등 특별한 사유 발생시 수시 신청 가능

나. 신청대상 :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 前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 공무원

(※ 근속연수 :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임)

다. 신청절차 : 명예퇴직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붙임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심사

가. 대상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대상자에서 제외함.

- (1)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5)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나. 심사기준

수당지급결정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하고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 (1) 상위계급의 공무원
-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4. 대상자 심사결정 및 통지

가.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 퇴직 대상자를 결정한다.

나. 명예퇴직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서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5. 명예퇴직 수당지급

◦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6. 기타사항

가. 부서의 장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필로 명예퇴직원을 작성하였는지와 대상자 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참조

※ 문 의 : 총무과 인사담당(052-219-7232)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 기재란	① 소 속		③ 공무원 구분	<input type="checkbox"/> 일반직	④ 직(계)급 (호봉)				
	② 前소 속 (특수경력직 공무원만 기재)			<input type="checkbox"/> 특정직()		<input type="checkbox"/> 기능직			
	⑤ 성명	한 글		⑥ 주민등록번호					
		한 자		⑦ 주 소 □□□-□□□					
	⑧ 전화번호(지택)			⑨ 근속기간	년 월	⑩ 정년일			
⑪ 비위·형벌 사항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비위조사중 <input type="checkbox"/> 수사진행중 <input type="checkbox"/> 형사재판 계류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의결 요구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input type="checkbox"/>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소속 기관 기재란	⑫ 정년구분		<input type="checkbox"/> 연령정년	<input type="checkbox"/> 계급정년	⑬ 정 년		(세, 년)		
	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		<input type="checkbox"/> 별정직	년 월	확인	인사담당관 (인)			
	⑮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월 (년 월)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input type="checkbox"/> 비위·형벌 사항 확인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비위조사중 <input type="checkbox"/> 수사진행중 <input type="checkbox"/> 형사재판 계류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의결 요구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input type="checkbox"/>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확인	인사 담당관	(인)	연금 담당관	(인)	감사 담당관	(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직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 신청서 작성방법 ●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을 기재함
2. ③란은 해당란(□)에 √ 표시하고, 특정직공무원(교육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에 기재함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기재
3. ④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계)급·호봉을 기재함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5.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 표시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 형 확정일, 형량을 기재함
6. ⑫ ~ □란은 해당기관의 인사담당관·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기재함(□란은 특수경력직 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기재)
7. □란은 명예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되, 월 단위 이하 잔여기간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8. □란의 확인은 동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공무원이 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위 :
3. 직(계)급 :
4.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기·수시)명예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 명시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른 수시명예퇴직 신청자만 기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퇴직자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10. . 부로 퇴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울산광역시북구 근무중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은 국가안전 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여 근무중은 물론 퇴직(전출)후에도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인 행위임을 자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10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위
직 급
성 명 (인 또는 서명)

서약집행관 소 속 ·직위
직 급
성 명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